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12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4. 1.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4. 1. 5. 접수 제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21.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891193호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9,650,181원 및 그 중 5,716,090원에 대하여 2021.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D 소유였는데, 2023. 12. 17. D이 사망하였고, D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피고, C 등 4명의 자녀들은 2024. 1. 5. 위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함)를 하였으며, 2024. 1.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등 합계 41,610,000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가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사단법인 E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부분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객관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액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이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현락

별지